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754호)

2022.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구자근의원안(2022.2.11. 발의, 의안번호 14754)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대한노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명시(구자근의원안)	2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구자근의원안(2022.2.11. 발의, 의안번호 제14754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예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대한노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명시(구자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u>활동</u>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 ----- ----- <u>활동</u> <u>및 운영</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¹⁾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붙임 1 참조】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²⁾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³⁾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 주요 운영 사업 >

1. 기관 운영지원: 중앙회 직원 인건비, 사업비(건강축제, 게이트볼대회,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중앙지원본부 등), 운영비 지원
2.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 참여
3. 취업지원센터: 노인의 민간취업 상담·알선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 센터 수: 192개소, 직원 수: 264명, '21.12월 기준 취업연계실적: 41,546명
4. 노인자원봉사센터: 경로당 노인자원봉사 클럽활동운영비(월 29만원), 인건비 지원
* 클럽 수: 1,850개소

- 2021년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은 국비(중앙회 운영경비,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 180억 7,000만원, 지방비(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 직원 인건비, 사업비 등) 2,678억원 등 총 2,858억 7,000만원임.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 6.~9.(생략)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 계	1,849.5	2,808	2,976	2,785.8	2,858.7
국고보조금	150.5	150	150	191.8	180.7
1. 기관 운영지원	18	18	18	19	19
2. 민간단체 지원	2.5	2	1	0.8	0.7
3. 취업지원센터	86	88	89	92	81
4. 노인자원봉사센터	44	42	42	80	80
지방보조금	1,699	2,658	2,826	2,594	2,678

* 근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 운영경비에 대하여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1. 1. 12.) 및 시행(2021. 7. 13.)됨에 따라, 기존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제2장의2(제32조의2~제32조의11)는 삭제되었음.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 조직에 필요한 비용에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대한노인회가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나 낮거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단체(사단법인)는 대한노인회를 제외하고도 총 53단체 【붙임 2 참조】가 있는데, 노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걱정한 것
인지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 제5조 및 조례를 통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민간단체 등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신중검토

- 대한노인회의 조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외에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단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3) 대한은퇴자협회 : 신중검토

- ‘운영’은 ‘활동’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대한노인회가 자의적인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대한노인회에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4

□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54

□ 창립 : 1969. 4. 대한노인회 창립

□ 조직 및 인력

○ (조직) 중앙회,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 경로당(66,279개소)

○ (인원) 중앙회 임원 34명(회장 포함), 직원 33명

* 회원 : 약 301만명 (전체노인의 약 43%)

□ 예산 현황

○ 국고 180억 7,000만원 지원(2021년 기준)

(단위 :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 계	1,849.5	2,808	2,976	2,785.8	2,858.7
국고보조금*	150.5	150	150	191.8	180.7
1. 기관 운영지원(중앙회)	18	18	18	19	19
2. 민간단체 지원사업	2.5	2	1	0.8	0.7
3. 취업지원센터	86	88	89	92	81
4. 노인자원봉사센터	44	42	42	80	80
지방보조금	1,699	2,658	2,826	2,594	2,678

*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붙임 2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소관 노인단체 현황

연 번	법 인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1	(사) 대한노인회	이 심	1973. 8.25
2	(사) 요산요수회	김원혜	1968. 4.14
3	(사)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1971.2.24
4	(사) 한국경로복지회	변창남	1977.12.13
5	(사) 복지마을진흥회	진성근	1978.12. 9
6	(사) 한국노인의전화	최성재	1994.12.15
7	(사) 한국치매협회	우종인	1995. 3.21
8	(사) 한국노인살롱복지원	손인웅	1995. 5.17
9	(사) 용해노인복지회	김태현	1995. 6.14
10	(사) 대한노인복지후원회	임진상	1995.11.29
11	(사)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달형	1995.11.29
12	(사) 한길봉사회	김종은	1995.12.12
13	(사) 사랑채	김금복	1996. 4.24
14	(사) 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정 훈	1996.10.16
15	(사) 문화생활복지회	윤신중	1996.12.26
16	(사) 한국효도회	배갑제	1997. 2.25
17	(사)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수철	1997. 3.28
18	(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유형준	1997. 5.21
19	(사) 한국한겨레노인복지회	윤석주	1997.11. 7
20	(사) 상록회	이달형	1997.12.23
21	(사) 대한노인복지회	전수철	1997.3.28
22	(사)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이존영	2001. 3.30
23	(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경석	2002. 1.29
24	(사) 부모효도하기운동	허태임	2003. 7. 8
25	(사) 대한실버산업협회	김한옥	2004. 6.22
26	(사) 선우복지마을	박경숙	2005. 5. 6
27	(사)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우영수	2009. 2. 4
28	(사) 연우	구자선	2009.12.31
29	(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2009.3.24

연 번	법 인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30	(사)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김일순	2009.12.31
31	(사)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	양정임	2010.10.14
32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2011.10.31
33	(사)국제연꽃마을	김경한	2011.11.10
34	(사)한국장례업협회	박귀종	1971. 2.22
35	(사)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박노달	2014.11.25
36	(사)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선구	2015.2.23
37	(사)희망나눔협의회	이희구	2015.5.12
38	(사)플러스 나눔	김대은	2015.8.11
39	(사)시니어희망공동체	임철순	2015.8.26
40	(사)희망누리복지회	김경옥	2015.10.29
41	(사)한국효문화 실천운동본부	최성규	2015.11.4
42	(사)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이용택	1979. 9.6
43	(사)전국공원묘원협회	김연태	1984.10.18
44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1992. 9.14
45	(사)한국장묘문화개척범국민협의회	김상하	1999. 4.30
46	(사)한국장례문화연구원	김판술	1999. 7. 8
47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창규	2003. 4. 8
48	(사)늘푸른장사문화원	진민자	2009. 2.20
49	(사)해피실버	최수호	2009. 7. 7
50	(사)한국은빛희망협회	박인상	2009. 9.30
51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박진우	1973.11.30
52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지영	1995.11.29
53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김 연	2009. 3.24